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 등)이 전파응용설비허가에서 적합성평가로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고시와 국가표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

### 2. 주요내용

- 가. 현행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를 국가표준(KS)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 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유·무선 충전 상태 포함)의 국가표준(KS)을 신설 적용(안 제3조제5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7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XX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 개정(안)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의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으로 하고 단서 중 “별표 3의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X 3278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2의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69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별표 4의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전자기기 중 전기자동차의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가표준 KS C 3380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적용한다.”로 신설한다.

제10조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저주파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고주파 측정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 시분할 복신 방식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가전기기의 자기장강도(자속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주요 제원 정보는 별지 제7호 서식,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측정결과 및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표준에 포함된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1항 중 “별표 4를”을 “국가표준 KS C 3390을”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생략) ②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 한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 「무선 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적 용한다. 단, 무선행행육상국·무선탐 지육상국(해당 무선국의 실험국 포함)은 별표 3의 「RF 펄스형 신 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 ----- --- 국가표준 KS C 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을 ----- ----- --- 국가표준 KS X 3278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 자파강도 측정방법」을 -----.
③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전 자기 중 가전기기의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 장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 ----- 국가표준 KS C 3369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
④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무선설 비 중 6 GHz 이상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6 GHz 이 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 력밀도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④----- ----- ----- --- 국가표준 KS C 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
〈신설〉	⑤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전 자기 중 전기자동차의 무선전력

현 행	개 정 안
	전송기기는 국가표준 KS C 3380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 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측정결과서 작성) 전자기장강 도 측정을 완료한 후 저주파 측정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고주파 측 정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무선국 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 시분할 복신 방식 무 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가전기기의 자기 장강도(자속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 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는 별지 제6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주요 제원 정보는 별지 제7호 서식,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측정결과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결과서 작성) ----- ----- 측정결과 및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표준에 포 함된 서식에 의거하여 ----- ---
제11조(보칙) ①전자파강도 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 강도로 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 강도로부터 계산(원거리일 경우	제11조(보칙) ①----- ----- ----- -----

현 행	개 정 안
가능하나 근거리인 경우는 <u>별표 4</u> 를 참조)할 수 있다.	----- 국가표준 <u>KS C 3390</u> 을 참조)-----.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2년</u>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 <u>2024년</u> ----- -----
<신설>	부칙 < 제2023-x호, 2023. x. xx.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삭 제>
[별표2]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삭 제>
[별표3]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삭 제>
[별표4] 6 GHz 이상의 휴대용(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기장 환경 측정 결과서(저주파용)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전자기장 환경 측정 결과서(고주파용)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요약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시분할 복신 방식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요약서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가전기기 자기장 강도(자속밀도) 측정결과 보고서	<삭 제>
[별지 제6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서	<삭 제>
[별지 제7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주요 제원	<삭 제>
[별지 제8호 서식] 6 GHz 이상의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결과서	<삭 제>